

제331회 임시회
2014. 6. 24.(화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4. 6. 24.(화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6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6월 23일

-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강호동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장(제4조부터 제17조까지)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,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○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법령 정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7조 (안 제1조)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 90조 및 제91조

○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정비

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조례」 (안 제5조) →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교육위원회의 설치) 및 동법 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, 이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수의 근거법령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, 교육위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었지만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교육분야의 전문성과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유지하기로 하였음.
- 향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감이 근무인력 구성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6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장(제4조부터 제17조까지)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,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법령 정비
 -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7조 (안 제1조)
 - 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
-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정비
 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조례」 (안 제5조)
 - 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무처의 설치 등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. ② 사무처는 의회의장(이하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 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 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무처장)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.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	제3조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전문위원)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,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③ 삭제<2010. 6. 30>	제4조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	제5조(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<u>그 밖의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4조(교육위원회의 설치)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 “교육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.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

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 ① 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에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.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

부 칙 <법률 제10046호, 2010.2.26. >

제2조(유효기간 등) ① 제2장,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

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정원 책정의 일반기준)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(이하 “단위기관“이라 한다)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
2.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
3. 지역교육청(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
4. 공립의 각급 학교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“사무직원“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